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지정 및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고시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제품의 기술이 법률상 분쟁 등이 있는 경우 평가·지정 등을 보류, 혁신제품 관련 비밀유지의무 부과 대상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달 적합 제품 조건 추가(안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는 자의 제품’은 조달 적합 제품(혁신제품 신청자격)에서 제외하도록 조건 추가

나. 혁신제품의 평가·지정 등의 보류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 신청제품의 기술이 법률상 분쟁 등이 있거나 신청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중인 경우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등 보류

다. 혁신제품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고시 절차 마련(안 제12조제2항, 제15조의2제5항 개정)

-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혁신제품 지정 및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고시하는 절차 마련

라. 비밀유지의 의무 확대(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비밀유지의 의무 대상을 평가위원회의 위원 외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평가기관의 직원으로 확대

마. 혁신제품의 지정 신청 공고 절차 마련(안 제8조제7항 신설)

- 행정안전부 장관이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는 절차 마련

바. 기타사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조문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2조, 제15조, 제17조, 별지 제11호서식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조달청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4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달의 적합성'이란"을 "'조달 적합 제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로 한다.

-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

제7조제1항 중 "위원은"을 "위원,"으로, "관련하여"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은"으로, "기업의 비밀"을 "비밀 또는 관

런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이 제1항"을 "제1항"으로, "비밀"을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조달적합성"을 "조달 적합 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내용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 신청제품을 모집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 중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로, "조달적합성에"를 "조달 적합 제품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심의예정 공고 등)"을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제품이 제12조에 따른 심의예정임을 행정안전부"를 "신청제품의 정보를 평가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제품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를 "이의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심의예정 공고"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조달정책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

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평가 및 지정 등 보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2. 신청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규격이 추가되거나 제15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을 "따른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제15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이 되는"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업체"를 "등록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정 이유, 지정일, 지정기간"을 "지정일,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로, "조달적합성에"를 "조달 적합 제품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달적합성"을 "조달 적합 제품"으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본문 중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을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연장과 관련하여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첨부서류 등 주요 내용"을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으로, "공고해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0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
	한다.
4.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5. “조달 적합 제품”이란 ----- --.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	
품을 말한다.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설></u>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
	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
	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
	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다. (생략)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수요기관”이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혁신제
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
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
은 본인이 진다.

③ (생략)

제8조(신청) ①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혁신
제품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6. ----- 「혁신제품 지
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
정」 제3조제5호 -----

-----.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
----- 위원, -----
-----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
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은
---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 제1항-----
-----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내용-----.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신청) ①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
업-----

---.

1. ~ 3. (생략)

②·③ 삭제

④ 신청자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6. (생략)

⑤·⑥ (생략)

<신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

⑤ (생략)

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

1. ~ 3.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 조달 적합
제품 -----

6.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내용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 신청제품을 모집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
서----- 조달
적합 제품에 -----

--.

제11조(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종합평가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이 제12조에 따른 심의예정임을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신청제품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⑤·⑥ (생략)

제12조(심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예정 공고 결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

① -----

----- 신청제품
의 정보를 평가기관의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의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
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 ① -----
----- 이해관계자 의
견수렴 -----

를」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

-----.

----- 심의위원회-----
-----.

제12조의2(평가 및 지정 등 보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제14조(등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신청제품이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규격이 추가되거나 제15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혁신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 이
유, 지정일, 지정기간, 지정기
관 등)

5. (생략)

제15조(추가등록) ① ~ ④ (생

2. 신청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
관의 장은 제1항의 보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등록) -----

----- 다른 신청제품의 혁신
제품 지정, 제15조에 따른 혁신
제품의 추가등록, 제15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이 되는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1. 2. (현행과 같음)

3. ----- 등록기업 ---

4. -----지정일,
유효기간-----

5. (현행과 같음)

제15조(추가등록) ① ~ ④ (현행

략)

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등록이 요청된 혁신제품이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제5항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등록 한다.

⑧ (생략)

제15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② (생략)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 같음)

⑤ -----
----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 조달 적합 제품에 -----

--.

⑦ -----

----- 조달 적합 제품 -----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3조제2항 및 제4항 ---

---. -----

추가등록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의 연장되는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
3조제2항-----.

⑦ -----

<p>른 지정기간의 <u>연장과 관련하여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첨부서류 등 주요 내용을</u>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에 <u>공고해야 한다.</u></p> <p>제17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p> <p>· ② (생 략)</p> <p>③ 평가기관의 장은 「<u>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u>」 제11조에 따라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제2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5년 1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12월 31일</u>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u>연장에 필요한 주</u></p> <p><u>요내용</u>-----</p> <p>-----</p> <p>-----</p> <p><u>공고하여야 한다.</u></p> <p>제17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u>」 제15조-----</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0조(재검토기한) -----</p> <p>-----</p> <p>-----</p> <p>----- <u>2025년 7월 1</u></p> <p><u>일</u> -----</p> <p>----- <u>6월 30일</u>-----</p> <p>-----</p> <p>-----</p> <p>-----.</p>
---	---